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제343회 임시회
2015. 10. 21.(수)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 청 북 도 의 회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29

2015. 10. 21.(수)
건설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0월 2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0월 5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0월 12일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재난안전실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2015. 3. 27 개정된「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16년 ~ 2020년 (5년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위·수탁협약에 의함

○ 기관선정 :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위탁사무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3. 검토보고 요지

(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 김학두)

가. 본 동의안은 제338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에 위탁하려는 사안으로,

다. 충청북도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와 과학적 분석,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도민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연구기관, 대학 등)에 위탁 운영함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라. 다만,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민간위탁의 정책 발굴에 따른 대내외적인 활용범위 및 방안 등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수탁기관의 도내 연구기관 및 대학, 법인 등 수행능력 가능한 업체의 사전 정보 분석이 있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 필요

나.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제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가. 기　　간: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2016년 ~ 2020년)

나. 위　　치: 충청북도 내

다. 공간규모: 20㎡이상

라. 위 탁 비: 11.2억원 정도(5년간, 인건비 6.2, 운영비 등 5)

마 수탁기관: 도내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

바. 위탁사무

○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 구축과 분석

○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 안전문화 포럼 구성 운영

○ 그 밖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붙임

나. 관계 법령

<붙임>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재 난 안 전 실
안 전 정 책 과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기본계획

○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 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개발 절실

○ 이를 위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 사전 동의가 필요**

○ 의회 동의 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추진, **안전충북 실현**

※ (근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Ⅰ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 위　　치: 충청북도 내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2016년 ~ 2020년)

○ 수탁대상: 연구기관·대학·법인 중

○ 수탁방법 : 충청북도 홈페이지 공고 후 선정

○ 센터규모: 20㎡이상

○ 위탁사무 내용

- 재난지역에 대한 조사 연구와 과학적 분석
- 재난안전 정책개발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발
- 도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 재난대비 훈련 컨설팅 및 DB 구축과 분석
- 민·관·학·연 등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운영
- 안전문화 포럼 구성 운영
- 그 밖의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Ⅱ 그간 추진사항

○ ‘14.10.02. 재난안전센터 설립 운영계획 수립

○ ‘15.02.09. 센터설립관련 조례 방침결정 입법예고 및 심의 의결

○ ‘15.05.15. 관련조례 제정 (조례 제3780호)

Ⅲ 소 요 예 산

○ 5년간 1,116백만원 정도 (2016~2020)

(백만원)

구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계	1,116	215	182	237	239	243
1. 인건비	617	94	96	140	142	145
2. 경비	89	40	10	13	13	13
3. 일반관리비	110	21	16	24	24	25
4. 사업비	300	60	60	60	60	60

Ⅳ 향 후 계 획

○ 센터 설립 및 운영 민간위탁 의회 동의 추진 : ‘15. 10월

○ 설립 및 운영예산 확보 : ‘16년 당초예산

○ 수탁기관 공모 : ‘16년 1월, 도 홈페이지 공모

- 공모대상은 도내지역 연구기관, 대학, 법인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추진 : ‘16년 1월 중

- 인원 : 9명 (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민간전문가는 별도 수당 지급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촉 : 9명 >

- 당 연 직: 3명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
  - 기획관리실장(심의위원장), 업무주관실국장(재난안전실장), 행정국장
- 위 촉 직: 6명 (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 관계전문가)
  - 재난관리과장 1, 재난안전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전문가 1

※ 간 사: 안전정책과장

○ 수탁기관 심의·선정 : ‘16년 2월중

- 심의사항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분포 등

- 선정방식
  - 공간규모 확인을 위해 현장(필요시) 방문
  - 서면평가 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공고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 : ‘16년 3월 중

<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협약(안) >

○ 위탁기간: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2016년 ~ 2020년)
○ 수탁기관: 도내 연구기관, 대학, 법인 중 선정
○ 센터규모: 20㎡이상
○ 소요예산: 11.2억원 정도(5년간)

관 계 법 령

▣ 충청북도 재난안전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5조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대학 또는 법인**(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③수탁기관의 장은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회계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예산의 지원)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27>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신설 2015. 3. 27>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27>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